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업무협약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는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의 건강한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 및 정보를 교류를 위하여 업무 협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기술원과 연구소는 경북지역 어린이의 건강한 자립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어린이 재활산업 활구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의 자립과 건강한 사회인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조한다.

제3조(협력의 범위) 기술원과 연구소는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 ①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협력체계 수립
- ② 협력기관 인프라(보유시설, 장비) 상호 이용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 ③ 협력기관 보유 인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
- ④ 지역 어린이 재활산업의 성장 도모를 위한 상호교류
- ⑤ 기타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및 협력 사업 등 협조 지원

제4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변경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력 과정과 결과 등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상호 협의하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기타) ① 기술원은 지역 어린이 재활의료 산업의 기반을 확보하여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지역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연구소는 재활산업의 방향성을 제안하여 지역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이 양해각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7일



소장 박경옥



원장 윤철석


